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외국의 사례	5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기관 의견	10
2. 해사전문법원의 심판권	12
가. 개정안의 내용	12
나. 검토의견	16
참고자료 1. 해사전담재판부 운영 현황	19
참고자료 2. 연계 법률안 현황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이라 통칭함)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문법원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연계하여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에 따르면, 신설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이고, 관할구역은 전국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u>7종류</u> 로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u>회생법원</u>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 ----- <u>8종류</u> 로-----. 1. ~ 7. (현행과 같음) <u>8. 해사전문법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생법원·해사전문법원</u> 과----- -----

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 ----- -----.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7장 해사전문법원</u> <u>제40조의8(해사전문법원장) ① 해</u> <u>사전문법원에 해사전문법원장</u> <u>을 둔다.</u> <u>② 해사전문법원장은 판사로</u> <u>보한다.</u> <u>③ 해사전문법원장은 그 법원</u> <u>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u> <u>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④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u> <u>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u> <u>제4항을 준용한다.</u> <u>제40조의9(부) ① 해사전문법원에</u> <u>부를 둔다.</u> <u>② 해사전문법원에 대해서는</u> <u>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u> <u>준용한다.</u>
<생 략>	

나. 외국의 사례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에는 영국과 중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은 고급법원(High Court)의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 속한 해사법원(Admiralty Court)에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선박에 의한 손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선원 또는 선장의 임금에 관한 분쟁, 예선 및 도선과 관련한 분쟁, 책임제한 분쟁 등이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함. 다만, 영국의 해사법원은 전문재판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완전히 독립된 전문법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¹⁾.
- 중국은 대외무역, 해상운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처음으로 해사법원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 기준 해사법원의 연간 접수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 2018년 기준 상하이, 텐진, 칭다오, 다롄, 광저우, 우한 등의 도시에 총 10개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사불법행위 분쟁 사건, 해상계약 분쟁 사건, 그 밖에 선박소유권·선박우선권·선박유치권·선박저당권 등 선박물권 분쟁 사건, 해난구조 분쟁 사건, 항구작업 분쟁 사건, 해운 사기 분쟁 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음²⁾.

1) 이재찬,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 pp. 8~19

2) 변지영·김현범,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 pp. 71~103

- 미국은 별도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해사사건은 연방 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음. 해사 사건을 연방법원의 관할로 두는 이유는 운송 사업을 위한 통일적인 법을 제공하여 해양상업을 진흥하고 해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함³⁾.
-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해사전담판사제도 등을 두고 있음. 홍콩의 경우 홍콩고등법원이 1심법원으로 해사관할을 가지고 있으며, 해사판사가 1명 지정되어 있음(2015년 당시 자료 기준). 싱가포르 역시 별도의 해사법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에 특정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4명의 전담판사가 해사사건을 맡고 있음(2015년 당시 자료 기준)⁴⁾.

3) 변지영·김현범,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 pp. 104~118

4) 해양한국,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2015. 10. 2. <https://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9>, 2024. 7. 31. 확인

다.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중국 등과 달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아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해사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해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점,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⁵⁾가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반면, 해사법원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해사사건의 수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점, 해사전담재판부의 확대 설치 및 운영 강화 등의 방안과의 효용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점, 해사법원의 설치로 해사사건의 관할이 집중되면 사건관계인들의 법원 접근성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5)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운·해상법은 영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선박건조계약도 대부분 법적 분쟁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함. 한 분석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상사건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해결됨에 따라 유출되는 법률비용이 매년 2,000억원~5,000억원에 달한다고 함(변지영·김현범, 「해사쟁송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 p. 3.).

<최근 5개년 해사전담재판부 사건 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합계	105	115	94	85	101	109	96	97	123	97
서울고등법원	19	22	18	13	20	18	15	24	16	11
부산고등법원	3	4	8	3	8	11	3	5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18	31	21	14	31	30	38	28	39	39
부산지방법원	64	56	47	55	42	50	39	40	59	42

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사전담재판부 본안 사건 중 사무분담명에서 ‘해사’ 또는 ‘해상’을 포함한 경우를 산출한 것임. 다만, 이는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된 5개 법원에 접수된 사건만을 파악한 것이므로, 다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사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최근 5개년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된 해사전담재판부의 사건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사건 기준 전체 사건 수는 2019년 105건, 2023년 123건 등 매년 100여건 내외이며, 매년 부산지방법원(본원 및 동부지원)에서 접수·처리하는 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해당 사건 수는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된 5개 법원에서 접수·처리한 사건만을 파악한 것이므로, 다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해사 관련 사건 수는 더 많아질 수 있으며,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으로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는 편이어서, 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이 관할하게 될 사건은 더 많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사법원의 설치 여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사사건 분쟁해결 소요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해사법원 예상 사건 수의 적정성, 해사전담재판부 확대 설치 등과 비교한 효용성, 사건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또한, 해사법원의 설치 개수, 관할사건 및 관할구역, 설치 지역 등의 사항이 해사법원의 예상 사건 수, 사건관계인들의 사법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사법원 설치 여부를 논의할 때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라.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전문법원 없이도 해사사건을 지장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법원 도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전문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얻는 효용이 별도 독립법원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회할 때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해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의 주요 소재지 및 사건관계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소재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의 경우 해사법원이 전국을 관할하여 타 지역 사건관계인 등의 사법 접근성 저하가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2020. 9. 제8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대법원장)에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주문한 바 있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해사법원의 구체적 설치형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전문법원의 체계적 전문화 및 법관의 전문성 역량 확보를 위한 사건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소송당사자들의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일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사사건의 수, 해사사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할의 집중 필요성과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사법원을 2곳에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설치 지역으로 부산, 서울, 인천(가나다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2. 해사전문법원의 심판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40조의10은 해사전문법원은 ① 「상법」 제4편제2장제4절(해상보험) 및 제5편(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②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③ 그 밖에 선박의 도선 및 예산과 관련된 다툼 등 해당 호 각 목에서 규정한 민사사건, ④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전문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u>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된 다툼</u> <u>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u> <u>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u> <u>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u> <u>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다툼</u> <u>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 는 감수·보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u> <u>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u> <u>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 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 야에서의 다툼</u> <u>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 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 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u>
--	---

다툼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 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 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카. 마리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건

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
신청사건

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
건

②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한다.

	<u>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u> <u>2. 해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u> <u>3. 해사전문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u> <u>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 제40조의10은 해사전문법원은 ① 「상법」 제4편제2장제4절(해상보험) 및 제5편(해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②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③ 그 밖에 선박의 도선 및 예산과 관련된 다툼 등 해당 호 각 목에서 규정한 민사사건, ④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해사법원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계류(2024. 8. 23. 전체회의 상정 및 1소위 회부)되어 있는데, 양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사법원(해사전문법원)의 관할사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해사법원 관할사건 범위 비교>

광규택의원안(제448호)	전재수의의원안(제1016호)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나.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1.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가. 선박의 도선 및 예산과 관련된 다툼

곽규택의원안(제448호)	전재수의의원안(제1016호)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항해, 선박채권 또는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다음 각 목의 해사행정사건 가. 해사항고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사행정청"이라 하며, 해사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나. 해사당사자소송: 해사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 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 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 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다툼 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보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툼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카. 마리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신청사건 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

○ 곽규택의원안은 해사법원의 관할사건을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으로 규정하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포괄하고 있고, 해사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심판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반면,

전재수의원안은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사건을 해사민사사건으로 한정하되,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이나 마리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까지도 해사민사사건으로 규정하여 해사민사사건의 범위가 광규택의원안에 비해 더 넓다는 특징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해사전담재판부 운영 현황

구분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0, 46민사부(해사/국제거래/중재), 제37, 87, 203민사단독(해사/국제거래/기업)을 해사사건 전담재판부로 운용 중에 있고, 민사합의 사건 배당 매뉴얼에 의한 해사 관련사건의 배당기준은 다음과 같음(해사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 대비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범위) 상법 중 제4편 제2장 제4절(해상보험) 및 제5편(해상)의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민사사건과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준용되는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해사사건전담 등), 제4민사단독(해사/국제거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 5민사단독(국제거래/해상/건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국제거래/해사)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해상/국제거래/중재)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2021

참고자료 2

연계 법률안 현황

연번	법률명(의안번호)	주요내용	비고
1	법원조직법(제1016호)	·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 해사전문법원의 심판권 규정 등	법사위 소관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1023호)	· 해사전문법원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 전국	
3	민사소송법(제1022호)	· 해사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 해사사건의 해사전문법원 이송 규정 등	
4	민사집행법(제1021호)	·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처분 등의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제1019호)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	
6	소액사건심판법(제1018호)	·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 관할 사건 추가	
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1017호)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 및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은 해사전문법원 전속관할	
8	중재법(제1020호)	·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해사사건인 경우 관할법원은 해사전문법원	